

공인의 성범죄 보도가 알권리의 대상인지, 아니며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생활의 침해가 되는지에 관한 발제자의 논문을 읽고, 많은 점에서 공감하면서 범죄보도가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써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들의 범죄보도에 단순한 흥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간과하였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인의 성범죄 보도에 한정’하여 발제자의 논문과 관련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겠습니다.

I. 범죄보도의 의의와 문제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하나로 미디어를 통한 범죄보도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격권 내지는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발제문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공인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보도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논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특징은 공소제기 이전인 내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에서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보가 비공개되고 있지만, 공인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범죄의 혐의보도가 폭로중심의 단정적·선정적 보도로 공인의 인격권 등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비교법적·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범죄보도는 공판정, 증인진술, 재판절차 등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형벌의 양형이나 유·무죄 인정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도 있다. 즉 단정적, 편파적, 선정적 범죄 혐의보

도로 인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일반 국민들에게 유·무죄의 예단을 갖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이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보도는 사회 예방적, 사회 방어적 측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긍정되고 있다. 발제문에서도 범죄보도는 규범안정화 기능,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와 바람직한 행위의 한계설정기능, 권력 감시기능 등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II. 공인에 대한 범죄보도

발제문은 공인의 성범죄 보도의 헌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1) 공인의 성범죄보도는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 이후나,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범죄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범죄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전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또는 세부적인 수사진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인에 대한 성범죄의 혐의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인 범죄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2) 그리고 성범죄 혐의보도는 피의자로 지목된 공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와 함께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3) 공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적 문제와 관련된 성범죄의 혐의보도는 비록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범죄의 혐의보도로 인한 공인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 등의 침해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된다. 인물중심으로 접근하는 견해에 의하면, 1) 범죄 혐의보도의 대상이 되는 공인의 범주를 중심으로, 그 대상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만약 공인에 해당된다면 그들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 등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범죄 혐의보도와 공인의 기본권과의 법익의 형량을 시도한다. 보도의 대상이 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보면, 2) 독일 Wenzel과 같이, 인격의 영역은 내밀영역과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과 공공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내밀, 비밀, 사사적 영역은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아, 이러한 영역에서의 범죄 혐의보도는 공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등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결국 이러한 접근방법은 대체로 공인이라는 인물중심의 접근방법과 침해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영역 중심의 접근방법이다.

그런데, 공인, 사인, 공적 생활영역, 사적 생활영역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공인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게 정의된다. 공인과 공적인물로 구분하기도 하고, 공적 인물은 저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공인과 사회이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제한적 공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다.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도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인의 범주를 좁게 이해하여, 연예인 등이 공인이나 공적인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 등으로 공인과 같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비록 공인으로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순수한 사적 생활영역이 존재한다. 이처럼 공인, 사인, 공적 또는 사적 생활영역은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보다는 혼재한다. 이를 정리하면,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와 관련한 영역은 공인의 공적 관심사, 사인의 공적 관심사, 공인의 사적 관심사, 사인의 사적 관심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인의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서는 표현 및 보도의 자유가 우선한다. 사인의 사적 관심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므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표현이나 보도의 자유보다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가 더욱 우선시 된다. 문제는 사인의 공적 관심사나 공인의 사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들 영역에서는 보도내용의 성격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 인물의 성격이나 보도내용에 비추어 공인성이나 공적 성격이 강할수록 보도의 자유가 우선시 될 수 있고, 그에 관한 보도는 수인해야 한다. 반면에 사인성이나 사적 관심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가 후퇴될 수밖에 없다.

III. 공인에 대한 범죄보도와 사생활 등의 침해 여부

발제문에서는 공인의 성범죄 보도가 문제되고 있다. 공인의 성범죄보도가 공인의 공적 관심사인지를, 공인의 사적 관심사인지를, 사인의 공적 관심사인지가 문제된다. 성범죄

보도의 특징은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성적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지만,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인의 성범죄 혐의’는 성적 취향이나 습관 등의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는 ‘공인이나 공적인물’ 또는 ‘공적 관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고, 성범죄 혐의보도는 어느 정도 수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성범죄의 혐의보도가 알권리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성범죄 혐의보도로 프라이버시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발제문에서는 성범죄 혐의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문제될 수 있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공인의 성범죄에 관한 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구성요소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인 의사형성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성범죄 혐의 보도라는 정보가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연예인 등을 포함한 공인의 성범죄 사실(혐의)은 이미 순수한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을 떠난 공적 관심사로서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물론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원칙이 없이 보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한계가 지켜져야 한다. 보도의 정보가치와 알권리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공인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형량이 필요하다. 공인에 관한 표현은 알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공인은 인격권의 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New York Times 사건에서도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공인의 성범죄 혐의는 공적 관심사로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 명예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보도는 허용될 수 없고 헌법적 보호가치를 누리지 못한다. 공인의 사생활로부터 오로지 호기심이나 자극, 즐거움을 얻기 위한 동기라면 보호가치가 없다. 그러한 자극적·선정적·단정적 보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 예방적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광고수입이나 언론매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대중의 구미에 맞는 자극적 주제를 선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인 진상규명, 감시 기능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독일판례의 입장이다. 공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서울지방법원 2000. 2. 2. 99가합64112)도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성범죄 사실에 대한 허위보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발제문에서 수사의 초기단계에서의 범죄의 혐의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주로 고소·고발이나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는 범죄가 허위로 판명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수사초기단계에서의 보도내용에 대한 진위발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공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이론에서도, ‘악의’라는 개념은 나쁜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임을 안 경우, 허위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로 이해되는 헌법적 개념이다.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고도로 인식한 경우라든지 또는 진실성에 관한 진지한 의심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형사판결의 확정 전, 수사기관의 공식적 수사결과 발표 이전의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IV. 성범죄혐의보도의 기준마련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는 취재원, 언론사의 자체 정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취재원에 의한 정보의 제공이나 언론사 스스로 습득한 자체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진실확인 의무가 아주 강하게 요구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통상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언론이 그들에게서 제공된 정보를 심사하고 확인할 의무는 없다.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관련 정보의 제공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에 의해 공판청구 전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훈령, 경찰청 직무규칙 등에서는 언론 공개기준을 마련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공개기준에는 다양한 예외를 두어 실질적으로는 피의사실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스스로도 보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윤리강령, 취재준칙, 보도준칙 등에서는 선정보도 금지, 피의사실 확인 노력, 피의자 해명기회 부여, 인권존중, 익명보도, 촬영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실명보도나 촬영 등 많은 부분에서 공인을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다.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는 그 성격에 따라 공인 내지는 공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도내용과 사생활의 범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 1) 우선 공인의 성적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한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
- 2) 비교법적으로 볼 때, 공인의 성범죄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격권이나 명예, 사생활의 자유보다 보도의 자유가 우선된다고 판단된다. 중대범죄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선을 그음으로써 사회 예방적·방어적 기능을 가지며, 일반국민이 알권리로서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발제문의 주장과 같이 형사판결의 확정이나 수사기관의 공식적 발표 이후에는 비교적 공인의 성범죄 혐의라고 하더라도 보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V. 마치며

이상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보도되는 정보가치의 선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정적, 단정적 보도의 금지, 제공 자료의 진실확인, 피의자의 반론기회 제공 등을 통한 정보가치 있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저널리즘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